

##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 Legal and Policy Study for Local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심현주\*\* · 김아린\*\*\* · 이홍기\*\*\*\*  
Shim, Hyun-Joo · Kim, A-Rin · Lee, Hong-Kee

#### 목 차

- I. 서론
- II. 해외 주요국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
- III. 국내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
- IV. 결론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논문접수일 : 2019.10.31.

심사완료일 : 2019.11.20.

게재확정일 : 2019.11.20.

\* 이 글은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가칭)지역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 방안」, 2019의 연구용역 내용 중 일부를 가공하여 재작성된 것이며, 이 글의 번역은 공식 번역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 법학박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제1저자)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제2저자)

\*\*\*\* 법학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교신저자)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이와 같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지식재산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한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내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특히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 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지역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지식재산, 지역 지식재산, 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 시행계획, 지역 지식재산 조례

## 1. 서론

지식재산기본법은 국가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의 마련을 규정한다. 또한 국가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규정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한편,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임을 의미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이에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특히, 20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에서는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제고”를 수립하였다. 한편,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6대 중점방향 중 하나로 “IP 존중 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수립하였고,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및 지역지식센터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지식재산 서비스 기관 및 인력의 대다수가 서울 및 대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을 분석한 후,<sup>1)</sup> 국내 지식재산 법체계인 지식재산 기본법과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기본법과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와의 관계 도출

1) 해외 주요국의 분석대상은 미국, 일본, 중국으로 한정하였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체제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법·정책 환경의 분석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본은 우리 법·정책 환경과 유사하므로 분석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은 우리의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지방특허조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으로 인해 각각 선정하였다.

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해외 주요국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

### 1. 미국

#### 가.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 1) 지식재산 관련 정부조직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 및 민간 주도형을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보호지침이 수립되어 각 행정부처로 전파되는 구조이다.<sup>2)</sup> 이에 연방 정부 주도 하에 다양한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3개의 직위 즉, 대통령실 직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 상무부 차관 지식재산권 담당 겸 특허상표청장, 그리고 무역대표부(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혁신 및 지식재산 협상 최고 책임자를 두고 있다.<sup>3)4)</sup>

##### 2) 지식재산 법률

2) 김준기·김난영,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제44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10, 204면.

3) IPEC,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2019, p.3.

4) 이와 더불어 상무부, 법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농무부, 보건사회복지부 및 저작권청이 각기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과 관련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IP)’을 2008년에 제정하였는데, 동법의 주된 제정 목적 중 하나는 관련 지식재산분야 행정기관 간에 공조체계(IP coordination)의 효율화 및 강화로서, 이 법에 의해 기존 상무부 소속 국가 지식재산집행조정위원회(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ng Council, NIPLECC)는 대통령실 소속의 IPEC로 대체·격상되었다. IPEC는 상원인준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며, 유관정부부처를 총괄하여 지식재산 집행과 관련된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집행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3) 지식재산 정책

미국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을 세움에 있어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며,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들이 그들의 혁신과 창작이 존중받고 보호되며, 미국의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진 공평한 경쟁의 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sup>5)</sup>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이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및 혁신 정책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이 기술 및 창조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지식재산을 도용하고 자유사회의 혁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의 혁신 경제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같은 맥락으로 해외에서도 미국의 집행 및 보호노력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무역 집행, 시장진입, 경쟁, 디지털 무역, 사이버 보안 및 법치주의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고 있다.<sup>7)</sup>

5) IPEC, op.cit, p.3.

6) 2018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기념 Trump 대통령의 선언문 등 참고.

7) 대표적으로는 USPTO의 전략계획(USPTO Strategic Plan),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이 있다.

## 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 1) 지역 지식재산전략

미국 연방, 주 정부 및 군(county) 정부 차원의 지역 지식재산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이나 체계는 없다. 다만, 특허상표청 산하에 지역 사무소와 특허·상표자원 센터 등을 통한 지역 지식재산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2) 특허상표청 지역사무소

2011년의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은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최소 3개의 지역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sup>8)</sup> 이에 본청 외 4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특허 출원인 및 혁신가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특허 심사관의 채용을 통해 심사관의 보유를 강화하며 또한 특허심사대기량을 감소시켜 특허 심사에 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sup>9)</sup> 지역 사무소는 지역의 지식재산 서비스,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명가, 기업가, 그리고 소기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 및 상표 등의 전문가와의 회의·상담 등을 통한 자문을 제공하며 특허·상표의 출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무소는 지역의 과학, 기술, 공학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USPTO의 전략계획을 각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무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 정부 및 지역 정부와 함께 USPTO의 목표를 지지하는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고

8)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TION 23. SATELLITE OFFICES에 따라 개정된 미국 특허법 35 U.S.C 제1조. Establishment (b)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hall maintain its principal office in the metropolitan Washington, D.C., area, for the service of process and papers an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its functions.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hall be deemed, for purposes of venue in civil actions, to be a resident of the district in which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except where jurisdiction is otherwise provided by law.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ay establish satellite offices in such other places in the United States as it considers necessary and appropriate in the conduct of its business.

9) 현재 디트로이트의 Elijah J. McCoy 사무소(2012), 덴버의 로키 마운틴 지역 사무소(2014), 산호세의 실리콘밸리 사무소(2015) 및 델러스의 텍사스 지역 사무소(2015)가 운영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sup>10)</sup>

## 2. 일본

### 가.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 1) 지식재산 관련 정부조직

일본은 국내외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sup>11)</sup> 제24조에 따라 2003년 3월 내각(内閣)에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를 설치하였다.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며, 부분부장은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이며, 본부원은 기타 모든 국무대신 및 학자이다.<sup>12)</sup> 지식재산전략본부에는 검증·평가·기획 위원회와 전문조사회, 디지털 아카이브 연계에 관한 관계 부처 등 실무자 협의회 및 메타 데이터 오픈화 등 검토 워킹 그룹 등이 설치되어 있다.<sup>13)</sup> 이 중 지식재산전략 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와 검증·평가기획위원회는 일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그룹이다. 즉,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는 2003년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중장기 지식재산전략인 ‘지식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을 수립하고 이에 따

10) 구체적인 예로 실리콘 벨리의 지역사무소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산타클라라 대학교(Sanata Clara University)와 ‘Speed Dating for Startups’을 공동 후원함으로써 150명 이상의 창업가, 소기업 대표, 학생이 지식재산에 관한 경영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맥코이 지역사무소는 디트로이트 자선대학교(University of Detroit Mercy)와 협력하여 ‘Patent Drafting Competition’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인디애나대학교 모리 로스쿨(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의 학생 일부에게 심사관, 심판관 업무 참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대학과 활발히 교류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11) 일본 지식재산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전략본부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존중하여 그대로 표기하였고, 그 이외의 부분은 지식재산으로 용어를 순화하였다.

12)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홈페이지(<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pdf/meibo.pdf>, 2019.10.17. 최종접속).

13)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홈페이지(<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 2019.10.17. 최종접속).

라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적재산전략 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지식재산정책비전의 수립을, 검증·평가기획위원회는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수립을 주관하고 있다.

## 2) 지식재산 법률

일본은 총리의 주재로 범부처적 성격의 법률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사전준비와 회의를 거쳐 지적재산기본법을 완성하여 2002년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적재산기본법의 소관부처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sup>14)</sup>의 지적재산추진본부사무국이며, 지적재산기본법 이외에도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정부령으로 지적재산전략 본부령을 소관하고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지식재산 정책은 관계 부성마다 별도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부성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 결과 국익을 해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모법(母法)으로서 기본적 이념과 그 실현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 지식재산 제도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 3) 지식재산 정책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3년에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戰略ビジョン)’을 공표하여 10년간의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조망하고 다가올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sup>15)</sup> 이에 따라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주도의 일원화된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정책비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8년 6월, 기존의 지적재산정책비전을 발전시킨 ‘지적재산전략비전 2025-2030’을 발표하여 새로운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sup>16)</sup> 또한 이에 따라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

14) 일본 내각관방의 직무사항은 내각법 제12조 제2항 참조.

15) (목표) 해외 신흥시장과 신흥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전략) ①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③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④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강화.

16) 지적재산전략비전은 일본의 환경 변화 및 징후, 미래 사회상 예측, 미래의 가치 및 가치창출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추진계획 2019부터는 ‘가치 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위한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을 책정, 추진하고 있다.<sup>17)</sup>

## 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 1) 지재종합지원창구

지재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 이하 ‘지원창구’라고 한다)는 2011년 4월, 다양한 전문가·지원기관 등과 공동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신규 사업화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sup>18)</sup> 지원창구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되어 있고, 중소기업 등이 기업경영 중에 안고 있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전개, 해외전개까지의 폭넓은 지식재산의 다양한 과제 혹은 상담을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있다.<sup>19)</sup>

지원창구에는 기업 OB 등의 창구지원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고, 상담 내용의 청취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 및 지식재산의 과제를 파악하여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각지 창구에서의 대면상담 또는 전화·메일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창구지원담당자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어드바이스 또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지원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지원체제를 갖추는 이외에 다양한 기관과 연대해서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무형재산인 지식재산을 경영 리소스의 하나로서 파악하

구조, 일본의 특징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지식의 플랫폼화를 추진해야 하며 다양한 가치를 창출·보호하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이 지향해야 할 사회상으로 ‘가치 디자인 사회’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 디자인 사회’의 본질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 프로세스 자체가 민주화되고, 각각의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디자인)하여 세상에 질문하고, 공감을 얻어 새로운 가치를 규정하여, 사회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17) 첫 번째 축은 「탈평균(脫平均)」의 발상으로 개개인의 주체를 강화하여 도전을 촉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축은 분산된 다양한 개성의 「융합」을 통한 신결합의 가속화하는 것, 세 번째 축은 「공감(共感)」을 통하여 가치가 실현되기 쉬운 환경 조성하는 것이다.

18) 지재종합창구 홈페이지(<https://chizai-portal.inpit.go.jp/>, 2019.10.17. 최종접속).

19) 설치 초기에는 일본 특허청이 창구사업을 운영·관리하였지만, 2015년도부터 상담원을 일괄 관리하여 연수·지도를 함에 따라 고도의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하 ‘INPIT’라고 한다)으로 이관하여 2016년 4월부터 창구사업의 운영·관리주체가 INPIT에 완전히 이관되었다.

여 단순한 출원·권리화 지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활용지원을 통해서 중견·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2)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각각의 시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역 지식재산 정책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수립한 ‘지식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畵) 2004’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권리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산업국 등에서 지역지식재산전략본부를 정비하는 취지가 담겨있다.<sup>20)</sup> 이에 따라 2005년, 전국 각지의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9개의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칸토지역(広域關東圏), 추부(中部), 간사이(近畿), 추코쿠(中国), 시코쿠(四国), 큐슈(九州), 오키나와(沖縄))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는 각 지역 내외의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각 구성기관이 연계하여, 매년 수립된 내각부의 지식재산추진계획이나 특허청, 각 지역 경제산업국의 중점시책을 바탕으로 지역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sup>21)</sup>

한편, 경제산업국(오키나와 지역은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에서는 지역

20)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그 후에도 지역지원에 관한 대처의 책정이 계속되어, 2015년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15’에서는 ‘지방의 지재활용 추진’이 중점 3개 핵심과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전략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중소기업에 의한 사업화를 목표로 한 대기업 또는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활용 등의 지식재산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지재활용추진 프로그램」으로서 일련의 시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21) 예를 들어, 홋카이도 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2018-2021)에서는 ① 중소기업 등에서 지재매니지먼트의 확립과 지식재산의 활용촉진, ②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응한 지식재산의 촉진, ③ 지식재산을 활용한 브랜드 형성 지원, ④ 인재육성 및 지식재산학습지원의 추진, ⑤ 추진체제의 충실강화 등 5가지 과제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北海道知的財産戰略本部, 「北海道知的財産戰略推進計畵(平成30年度~平成33年度)」, 平成30年4月 참고).

의 지식재산 활동의 중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적재산권실이 설치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실은 일본 특허청 시책의 지역 담당자임과 동시에,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사무국으로서 지역의 수요에 따른 시책의 기획입안을 하고,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22)</sup>

### 3. 중국

#### 가.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 1) 지식재산 관련 정부조직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sup>23)</sup>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총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up>24)</sup>을 설치하여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산하 국가지식산업국을 통해 산업재산권 업무를 총괄한다. 동 기관은 종래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중 한정된 업무만 담당하였으나, 2018년 국무원 기구 개혁 이후 상표와 지리적 표시 관련 업무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강국(强国) 건설 정책 및 발전계획,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등 정책의 수립에 참여한다. 한편 저작권 관련 업무는 중앙선전부 산하 국가판권국이 담당한다.

22)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제도보급 팸플릿·지재활용사례집·각종 매뉴얼 작성, 제도보급이나 지재 활용을 위한 계발 세미나 개최, 기업을 방문해서 지원제도의 소개, 지원제도를 이용할 때의 서포트, 상공회의소·상공회, 지역금융기관 등의 지원기관과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하다(小宮 慎司, 知財支援を通じた地域経済活性化の取り組み, 特技懇 No.284, 2017, 9-10面).

23)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장관급),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된다.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는 국무원 판공청(办公厅), 국무원 직속특설기구, 국무원 직속기구, 국무원 직속사업단위 등이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guowuyuan/zuzhi.htm>, 2019.10.18. 최종접속).

24) 2018년 3월 17일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폐지되고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를 대체하였다.

## 2) 지식재산 법률

중국은 우리의 지식재산기본법과 같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상위규범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국무원의 승인<sup>25)</sup>에 의해 지식재산전략 마련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국가지식재산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있다.

2005년 1월,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제정업무 지도자그룹(이하 ‘전략 제정 지도자그룹’)<sup>26)</sup> 설립을 정식으로 승인·공표하였다. 전략제정 지도자그룹의 주요 업무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계획,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의 정책연구 등에 대해 국무원에 건의하는 것이었다.<sup>27)</sup> 2008년 전략제정 지도자그룹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제정·공표하였다. 이후,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이행을 강화하고 후속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원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이하 ‘IP 연석회의’)<sup>28)</sup>를 설립하였다. IP 연석회의 설립 승인에 관한 문건<sup>29)</sup>에 근거하여 IP 연석회의는 매년 연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의 연

25) 국무원은 중국 헌법 제85조에 의거하여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그중 국무원의 행정입법권을 지칭하는 표현인 ‘행정법규’는 우리나라의 법규명령 또는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 ‘규정’, ‘규칙’, ‘방법’ 등의 명칭으로 제정된다.(정연부, 「중국법의 이해」, 대학로, 2016, 72면~75면).

26) 전략제정 지도자그룹의 장(長)은 총리가 맡았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23개의 관련 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되었다.

27)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11면.

28)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이행을 위하여 조직된 부처간 협력체제로 이하의 IP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상무부, 문화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판권국), 통계국, 임업국, 법제판공실, 중국과학원, 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29) 2008년에 최초 발표하고 2016년에 수정 발표한 ‘국무원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설립 승인에 관한 회답’은 IP 연석회의의 주요기능과 구성원, 업무규칙 등에 대해 명시하였다. 동 문건에서 제시된 IP 연석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원의 지도 하에서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업무를 총괄한다. 둘째,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심도 있는 실시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중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계획을 제정한다. 넷째, 유관 정책조치의 이행을 지도·감독·감사한다. 다섯째,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 중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간 업무계획을 취합하여 ‘지방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강국건설 업무 요점’의 형태로 공개한다. 더불어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이행성과를 점검·평가한다.

### 3) 지식재산 정책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체계화된 지식재산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무원의 주도 하에 국가지식재산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무원은 다년간 전략제정 지도자그룹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8년 6월에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국가전략인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발표하였다. 동 강요는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령성 문건<sup>30)</sup>의 성격을 가지며<sup>31)</sup>, 지식재산권제도 완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등에 관한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본 강요는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의 지식재산정책 및 연간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할 기본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IP 연석회의는 2009년 3월 ‘200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매년 연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후 국무원은 2015년 12월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이하 ‘지식재산 강국 건설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제도 개혁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의 개혁,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배치 및 리스크 관리,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강화, 조직 실시 및 정책 보장 강화의 6개의 중점업무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 의견에 근거하여 각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연간 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30)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산당이 발표하는 공식 문건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31) 知识产权报,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实施十年大事记”, 2018.6.6. (<http://www.sipo.gov.cn/ztlz/gjzscqzlgbybsszn/sznjdbd/1125007.htm>, 2019.10.31. 최종접속).

## 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 1) 지역 지식재산권전략 실시계획

국무원의 ‘지식재산 강국 건설 의견’에 근거하여 IP 연석회의는 ‘2019년 지방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강국 건설 업무요점’을 수립하였다. 동 요점은 지식재산 강국 건설 의견에서 제시한 6개의 중점업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베이징시 등 32개 지역의 업무조치 및 제공할 성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2) 특허 촉진 및 보호 조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각 지방 정부에서 지역별 ‘특허 촉진 및 보호 조례’<sup>32)</sup>(이하 ‘지방특허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구역 내 특허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등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sup>33)</sup> 지방특허조례는 특허법(专利法) 및 특허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에 의거하여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3차례의 전리법 개정을 거칠 때마다 지방특허조례의 입법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허실시세칙은 특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만을 제공하는 반면, 지방특허조례는 특허의 보호와 활용 등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실시세칙을 보완한다.<sup>34)</sup>

한편, 중국 내에서는 지역별로 지방특허조례가 각각 입법되어 시행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조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통일된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한 현행 지방특허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sup>35)</sup> 첫째, 법 집행 기준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각 성(省) 및 대도시에서 조례의 제정권을 보유하여 제정한 지방

32) 지방성 법규로서 ‘특허 촉진 및 보호 조례’, ‘특허 조례’, ‘특허 촉진 조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촉진 조례’ 등 지역별로 명칭이 다소 상이하다.

33) 현재 베이징시, 장쑤성, 푸젠성, 랴오닝성, 휘양시, 산둥성, 우한시 등 40여 개의 지역에서 지방특허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34) 国家知识产权局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 《专利保护与促进条例》研究(2011) 요약문(<http://www.cnipa-ipdrc.org.cn/article.aspx?id=74>, 2019.10.18. 최종접속).

35) 이하의 문제점은 国家知识产权局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 상계서 참조.

특허조례는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제정되어 지역별로 법 집행에서 상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입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이다. 지방 조례는 특허법의 하위 법률로서 특허법 개정에 따라 함께 개정된다. 이에 특허법이 개정될 때마다 40여 개 지방특허조례의 개정을 위해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며 인력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개정사항이 즉각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일된 조례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논의만 진행되었을 뿐 구체적인 입법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 4. 소결

첫째,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관련 계획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 지역(주) 정부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특허법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상당수가 연방 법률로 제정되어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부의 경우에는 지역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특허상표청 산하에 지역 사무소와 특허상표자원 센터 등을 통한 지역 지식재산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인 지적재산정책비전과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 지식재산정책은 각 지역 내외의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의 각 구성기관이 연계하여, 매년 수립된 내각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이나 특허청, 각 지역 경제산업국의 중점시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특성이나 실정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각 지역별로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결정과 국가계획에 의해 지식재산정책이 수립되며,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총괄하는 법령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베이징

등 주요 지방정부는 별도로 특허 촉진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지역별로 지방특허조례가 각각 입법되어 시행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조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 III. 국내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

#### 1.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 가. 지식재산 관련 정부조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위원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학계·연구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심의·조정이 있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이 담당하며, 문화·예술분야 및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sup>36)</sup>

3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지식재산전략과 R&D의 연계, 공공연구기관의 IP 경영전략 강화 등을 수행한다.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등의 신지식재산권은

## 나.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상위규범으로서 특허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적·법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다. 동법은 총 5개장 및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특히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제2장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을 규정한다.

## 다. 지식재산 정책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즉,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이 수립된 이후,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대 전략<sup>37)</sup>과 20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였고, 최근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6대 중점방향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년 대비 신규 및 확대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핵심성과를 매년 도출하고 있다.<sup>39)</sup>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계부처에서 분야별·기능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7) ①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38) ①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②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③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④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 ⑤ 글로벌 IP 대응 역량 강화, ⑥ IP 존중 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

39)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는 20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

## 2.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 가.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 1) 경제 현황

##### 가)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및 증감률

2016년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642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77조 원(4.9%) 증가하였다.<sup>40)</sup> 시도별 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373조 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359조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17조 원으로 가장 작았다.<sup>41)</sup>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전국의 49.6%로 전년도의 49.4% 보다 0.2%p 확대되었다.

한편, 시도별 증감률은 제주, 충북, 인천 등에서 전국 평균수준(4.9%)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대구, 전북, 울산 등은 소폭 증가하였다.<sup>42)</sup>

##### 나) 산업의 시도별 비중

먼저, 농림어업의 비중은 경북(15.6%), 전남(14.7%), 충남(13.6%) 등의 지역에서 높았으며, 제주(5.0%→5.7%), 전남(14.4%→14.7%), 서울(1.2%→1.4%) 등은 비중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광·제조업의 비중은 경기(28.4%), 충남(11.9%), 경북(9.8%) 등에서 높았으며, 충북(5.0%→5.2%), 전남(4.6%→4.7%), 충남(11.8%→11.9%) 등은 비중이 확대되었다. 지식재산과 관련이 깊은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비중은 서울(30.1%), 경기(21.1%), 부산(5.8%) 등이 높았으며, 경기(20.8%→21.1%), 인천(5.1%→5.2%) 등에서 확대되었다. 특히, 건설업의 비

---

스텝 구축”을,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는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제고”를 수립하였다.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6대 중점방향 중 하나로 “IP 존중 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수립하였고, 2019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는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신규 추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0) 통계청, 「2016년 지역소득통계」, 2018, 7면.

41) 상위지역: 경기(373조원), 서울(359조원), 충남(117조원), 하위지역: 제주(17조원), 광주(34조원), 대전(36조원).

42) 상위지역: 제주(10.5%), 충북(7.6%), 인천(6.9%), 하위지역: 대구(1.8%), 전북(2.7%), 울산(3.6%).

중은 경기(26.2%), 서울(12.3%), 충남(8.8%) 등이 높았으며, 경기 (24.1%→26.2%), 인천(4.7%→5.1%), 충북(3.5%→3.7%) 등에서 확대되었다.<sup>43)</sup>

## 2) 지식재산 현황

### 가) 지식재산 출원 현황

2018년 기준, 내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397,598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다.<sup>44)</sup> 지역별로 지식재산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는 경기(47,175건), 서울(47,123건), 대전(10,767건) 순, 실용신안은 경기(1,988건), 서울(1,401건), 인천(359건) 순, 디자인은 경기(18,827건), 서울(18,710건), 대구(3,522건) 순, 상표는 서울(79,322건), 경기(41,644건), 인천(6,727건) 순으로 출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5)</sup>

### 나) 지식재산 등록 현황

2018년 기준, 내국인의 지식재산권 등록은 총 230,43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식재산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는 경기(25,440건), 서울(25,224건), 대전(5,877건) 순, 실용신안은 경기(913건), 서울(620건), 인천(155건) 순, 디자인은 서울(14,494건), 경기(13,956건), 대구(2,790건) 순, 상표는 서울(46,397건), 경기(22,036건), 인천(3,267건) 순으로 등록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6)</sup>

## 나.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

### 1) 의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75자치시, 82자치군, 69자

43) 통계청, 전계서, 8면.

44) 특허청, 「2018 지식재산통계연보」, 2019, 요약문.

45) 특허청, 상계서, 34-35면.

46) 특허청, 상계서, 188-189면.

지구)로 구성되며,<sup>47)</sup> 이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sup>48)</sup>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도 상위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따르거나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sup>49)</sup>

## 2) 입법 현황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2항). 이에 지식재산 관련 기본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43개<sup>50)</sup>로 파악된다.<sup>51)</sup> 지식재산 관련 기본조례는 명칭상 크게 ‘지식재산 기본조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지식재산 진흥조례’ 등으로 구분된다.<sup>52)</sup> 다만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sup>53)</sup>

대부분의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

47)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48)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단체법 제22조.

49)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규에 반할 수 없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이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법 제22조).

50) 강원도, 거제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곡성군, 광양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군산시, 담양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 삼척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 시흥시, 안동시, 양구군, 울산광역시, 원주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정선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천시, 진주시, 창원시, 청안시,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백시, 포항시, 하동군.

51)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40개임을 고려할 때, 아직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관련 기본조례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2) 한편 ‘지식재산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지닌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우가 유일하며, 나머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또는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명칭을 갖는다.

53) 가령,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가 아닌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관련 기본조례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예산군의 경우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닌 ‘추사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추사지식재산’이란 군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것을 말하며(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그 내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진흥 등을 규정하기보다는 추사지식재산권의 사용권 설정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을 갖추고 있다. 이에 크게 총칙,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체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촉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보칙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규범이 지식재산 기본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주요 내용

#### 가) 총칙

지식재산 기본조례의 총칙은 조례의 목적, 이념,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목적은 대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진흥 및 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정의 등은 지식재산 기본법 등을 따르고 있다.

#### 나) 각칙

첫째, 지식재산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또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획 수립의 시기, 방법과 함께 기본계획에 따른 필수 포함 사항 등이 규정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설정 및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둘째,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들은 공통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식재산 기본법과 같이 개별 규정으로 마련하는 경우와 전체 체계에서 필요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으로 상이하다.

셋째,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위원회의 고유업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회의의 개최와 의결방식 및 수당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종래 존재하던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맡게 되어 해당 조례가 삭제된 경우도 존재하며, 비밀준수의무 등을 함께 부과하기도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및 공무원 등의 발명, 지방자치단체의 상표 및 브랜드 등의 관리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조례가 규정하는 목적 및 지식재산의 범위에 따른 것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4) 지식재산기본법과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와의 관계

##### 가) 지식재산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상위규범으로 타법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의 상위규범임은 물론, 하위규범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해서도 상위법률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의 형식과 내용도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나) 체계적 정합성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들은 대체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취하고 있는 ‘총칙-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체계-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촉진-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보칙’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에 따라 추가된 구성과 내용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와 지식재산 기본법의 체계적 정합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 자체적으로도 지자체 내의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개념적 정합성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가 상정하고 있는 개념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기타 상위법령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sup>54)</sup> 이러한 문제는 상당 기간 개정되지 못한 조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sup>55)</sup> 아울러 지식재산

54) 예를 들어,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식재산을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임은 물론(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관련법 등의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기본법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병렬적 관계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의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이 퇴색되는 경우도 지적된다.<sup>56)</sup>

#### 다.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

##### 1) 지역 지식재산센터

###### 가) 설립근거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발명진흥법 제23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7 및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등을 법적 근거로 설립되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발명 풍토 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 및 적극적 활용 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57)</sup>

###### 나) 기능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발명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① 산업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분쟁대응 지원, ②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③ 지역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동향 조사 및 분석, ④ 아이디어의 발굴·구체화 및 권리화 지원, ⑤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sup>58)</sup>

55) 다만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도 있다. 가령,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7.4.11. 공포 및 2017.4.11. 시행되었음에도 지식재산을 정의하면서 포항시의 조례와 같은 내용을 따르고 있다.

56)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내용과 구성에 있어 대체로 지식재산 기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조례로서의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여지를 주고 있다.

57)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s://www2.ripc.org/portal/introduce/introduce.do> 2019.10.16. 최종접속).

58)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다) 운영 일반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① 사업의 기획,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중앙위원회를 둔다. 그 외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센터에는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sup>59)</sup>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센터는 총 17개,<sup>60)</sup> 기초센터는 총 6개이고,<sup>61)</sup>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장과 협의하여 자립형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19년 현재 3개의 자립형센터<sup>62)</sup>가 설립됨으로써 총 26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장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지식재산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진행 및 운영한다.<sup>63)</sup> 지역 지식재산센터에는 1인의 센터장이 있으며 컨설턴트, 변리사, 사업업무, 연구원 등의 적정수의 직원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센터장은 대부분 운영기관의 업무와 겹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팀장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운영기관이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팀장의 경우 운영기관 소속의 관리자 역할에 앞서 컨설턴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 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보유한 지역(자립형 센터 포함)에 한하여 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진흥계획을 보유한 지역은 26개 중 9개 지역에 불과했다. 일부 지역은 지식재산 진흥조례에서 진흥계획을 5년

59)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6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61) 수원, 춘천, 충주, 구미, 안동, 진주.

62) 부천, 강릉, 태백.

63)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2조, 제15조.

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조례에 따르면 진흥계획은 지자체(도지사, 시장 등)에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전담부서를 설치한 사례는 드물며 소수의 인력이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 또는 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지역별 진흥조례 및 진흥계획 보유 현황

지역	진흥조례	진흥계획	지역	진흥조례	진흥계획
서울	○	○	충남	○	○
경기	○	○	충북	○	○
수원	○	경기계획 적용	충주	○	충청계획 적용
인천	○	○	대전	○	○
부천	X	인천조례·계획 적용	세종	○	X
강원	○	○	경남	○	X
춘천	X	강원조례·계획 적용	진주	○	X
강릉	X	강원조례·계획 적용	경북	○	X
백	X	강원조례·계획 적용	안동	X	X

아울러, 진흥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처의 점검·평가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점검·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 및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이 각 지역 진흥계획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오히려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계획의 점검·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진흥계획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지역별 진흥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진흥계획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는 물론, ‘진흥계획’, ‘기본계획’

등 지역마다 상이한 명칭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3. 소결

먼저,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및 지식재산과 관련이 깊은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시도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된 현상을 보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등록 현황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출원·등록 건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그 외 지역 중에 대전이나 대구에서 각각 특허, 디자인의 출원·등록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 정책 측면에서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농림어업이나 광·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이외에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율적인 국가 지식재산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규범의 통합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자신의 목적에 쫓아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들 상당수는 지식재산 기본법을 모체로 그 구성과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등에 의해서로 다른 체계로 발전하여 그 효율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비효율과 격차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을 살펴본바,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근거한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가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보임에도 그 체계의 복잡성과 개념적 혼재, 혼돈 등으로 실제 정책의 추진과 대응의 측면에서는 일체화된 유기적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가다듬는 정비가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지방조례의 제·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의 영역이므로 중앙적·통일적인 개선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전체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원활화와 그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통일적인 법령 및 정책지침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센터는 광역 17개, 기초 6개, 자립형 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초센터는 일부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자립형센터는 기초센터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비 예산의 지원이 매우 협소하고, 전문인력 확보 부족 등으로 운영자체가 힘들어 역량부족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립형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에 맞는 서비스 고도화와 그에 맞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자립형센터를 폐관하여 기초센터 또는 광역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센터의 역할 강조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 IV. 결론

### 1.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적 검토

주요국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에서 중시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과 이를 통한 실체적 지역 지식재산 진흥성과의 도출로 파악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 구분되는 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산업특성과 역량에 따른 USPTO 산하의 지역 사무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혁신가와 창작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우리와 유사한 정책체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 외 별도로 지역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이 없지만, 지원창구의 개설 및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 등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더해 통일된 정책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어 경쟁을 통한 수요자 친화적 정책에 아울러 통일적 체계구축을 통한 정책적 효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국과 유사한 정책적, 체계적 근거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이를 다시 고려하여 지역 지식재산 접근의 기회를

형식적으로 구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지역의 산업특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

지식재산기본법은 정책규범의 특성상 정부 주도적으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의 내용 중 하나로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제4조 제2항)로서 선언적 규정만을 하고 있을 뿐,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인 총괄규범으로서 기본법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의 영역이므로 중앙적·통일적인 개선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전체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원활화와 그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통일적인 법령 및 정책지침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상위규범을 초월한 표준적 국가 시책으로서의 지식재산기본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혼재된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의 면모를 상세히 살펴 통일적 체계 아래에서 효율성을 재고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색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준기·김난영,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10
- 김재희, 김용식, “지식재산권 실적의 지역별 변화”,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18
- 김현철, 최병훈, “지역지식재산센터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 및 추

- 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2014
- 정연부, 「중국법의 이해」, 대학로, 2016
- 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 2011
- 특허청, 「2018 지식재산통계연보」, 2019
- 통계청, 「2016년 지역소득통계」, 2018
- IPEC,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2019
- USPTO, *FY2018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19
- USPTO, *2018-2022 STRATEGIC PLAN*, 2018
- 日本弁理士会, 「日本弁理士会地域知財支援・知財広め隊活動報告2018」, 2018
- 日本特許庁, 「特許庁における地域・中小企業に対する知財支援について」, 2017
-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19」, 2019
- 北海道知的財産戦略本部, 「北海道知的財産戦略推進計画(平成30年度~平成33年度)」, 平成30年4月
- 张志成, 对制定和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的思考, *SCIENCE&TECHNOLOGY FOR DEVELOPMENT*, 2012
- 刘祎楠, 我国地方专利立法问题研究, 沈阳工业大学, 2009
- 宋河发, 建设知识产权强国面临问题分析和战略任务与政策措施研究, 中国科学院, 2016
- 国家知识产权局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 《专利保护与促进条例》研究, 2011

[Abstract]

## Legal and Policy Study for Local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Shim, Hyun-Joo**

*Ph.D. in Law, Senior Researcher, KIIP*

**Kim, A-Rin**

*Ph.D. student in Law, Researcher, KIIP*

**Lee, Hong-Kee**

*Ph.D. in Law, Senior Researcher, SKKU*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s the highest norm concerning IP, the Republic of Korea unifies consistently and consistently the basic principles and significant polic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s IP policy directly from the law. In the meantime, by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IP at the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ing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IP Committee to review and adjust the relevant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so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maximize the value of IP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IP,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promote comprehensive measures to foster and create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IP.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promote local IP policies. Besides, nations, local government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 sectors should cooperate to effectively promot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protect, and use IP and to build the underlying basis (Article 4).

Under the Framework Act on IP, policies for promoting local IP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n imbalance in the IP environment between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regional IP deviations and promote local IP,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right improvement pla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IP laws and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the limitations of IP laws and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Moreover, we analyzed the domestic IP environment and the regional IP laws and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IP laws. Also,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IP promotion plan (master plan)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local IP center.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legal basis for designing the promotion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local IP promotion polic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aws and policies to build a balanced foundation for local and national IP development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need for harmonized legal guidelines for promoting local IP promo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IP centers.

**Key words** : Intellectual Property, Local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Implementation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Ordinance of Local Intellectual Property